

보도시점 2023. 11. 14.(화) 11:00
11. 15.(수) 조간

배포 2023. 11. 14.(화) 09:00

동물용의약품 올(All)바르게,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지켜주세요

- 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 관리강화 방안 마련
- 온라인 단속 강화, 모니터링 지침(가이드라인) 제시,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등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건전한 동물용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판매 관리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와 관련된 대응조치로, 주요 내용은 ▲건전한 온라인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이버 단속강화,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불법 유통경로 차단,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수요자 맞춤형 홍보 추진이다.

검역본부는 매월 온라인 플랫폼별·위반유형별 키워드 검색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사안에 따라 사이트 차단, 수사요청 등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올(All)바르게'* 카드뉴스 및 정보 그림(인포그래픽)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확산, ▲반려동물 보호자용 홍보지(리플릿) 배포, ▲ 동물진료용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수입신고 안내서 발간 등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유통판매업자, 동물의료 현장 수의사, 반려동물 보호자, 모두(All)가 동물용의약품 수입·유통·판매·사용 모든(All) 단계에서 올바르게 유통·소비하도록 관련 규정 등 홍보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는 앞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유통체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동물용의약품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전반을 촘촘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동물용의약품등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업체, 동물의료 현장 수의사 및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동물용의약품 올(All)바르게 카드뉴스, 정보 그림(인포그래픽)
 2. 반려동물 보호자용 동물용의약품 올(All)바르게 홍보지(리플렛)
 3. 동물진료용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수입신고 안내서

담당 부서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성구 (054-912-0529)
		담당자	사무관	김돈환 (054-912-053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건강한 동물용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

동물용의약품 올(AI)바르게



· 동물용의약품 ① 온라인 판매 제한 규정

- ✓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동물용의약품”입니다.
- ✓ “동물용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① 지정된 장소 판매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은 반드시 동물약국 및 동물병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② 유사 동물용의약품 판매 금지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 등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③ 불법 동물용의약품 판매 금지

누구든지 ①과 ②에 위반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판매 또는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안됩니다.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44조·제50조제1항·제61조·제61조의2 제85조제1항·제4항

①·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동물용의약품 ② 온라인 불법 판매 유형

반려동물 내·외부 기생충구제제

금지 표현 개, 고양이 심장사상충구제제, 반려동물 구충제, 벼룩·진드기 구제제, 모낭충증 치료제

동물 감염병 치료제

금지 표현 개 파보장염 치료제, 고양이 복막염(FIP) 치료제 (GS-441524, 무티엔) 등

기타 질병 치료제

금지 표현 반려동물 관절질환 치료제, 아토피 치료제, 항암제, 심부전·신부전 치료제 등

기타 의학적 효능·효과 등 허위 과대 광고

금지 표현 “동물용의약품”이 아닌 품목에 대하여 피부 소양감 개선, 항염·진통 효과, 통증 경감, 면역강화, 알레르기 개선, 간기능 개선 등 특정 장기·부위에 대한 의학적 효능의 표기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정보 확인 및 불법 판매 신고까지 통합정보시스템 「동물용의약품 이지(AZ)트」를 활용하세요.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신고센터」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운영 예정

건강한 동물용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

동물용의약품 올(AI)바르게



- 📍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치치 또는 예방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동물용의약품”입니다.
- 📍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동물용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서만 구매하셔야 합니다”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판매 제한 규정

- 📍 “동물용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 ①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은 반드시 동물약국 및 동물병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 ② 누구든지 약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 등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 ③ 누구든지 ① 과 ②에 위반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판매 또는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안됩니다.

* 법 제44조 제5호제1항 제51조 제61조제2항 제65조제1항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①·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유형

하나. 반려동물 내·외부 기생충구제제

위반 유형 개, 고양이 심장사상충구제제, 반려동물 구충제, 벼룩·진드기 구제제, 모낭충증 치료제

둘. 동물 감염병 치료제

위반 유형 개 파보장염 치료제, 고양이 복막염(IP) 치료제 (GS-441524, 무티엔) 등

셋. 기타 질병 치료제

위반 유형 반려동물 관절질환 치료제, 아토피 치료제, 항암제, 심부전 치료제, 신부전 치료제 등

넷. 기타 의학적 효능·효과 등 허위·과대 광고

위반 유형 동물용의약품이 아닌 품목에 대하여 피부소양감 개선, 항염 진통 효과, 통증 경감, 면역강화, 알레르기 개선, 긴기능 개선 등 특정 장기·부위에 대한 의학적 효능의 표기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신고

동물용의약품 인허가정보 확인 및 불법 판매 신고까지 동물용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동물용의약품 이지(AZ)트」를 활용하세요.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신고센터」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1일 운영 예정)

동물진료용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수입신고 안내서



농림축산검역본부

1. 수입신고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대한수의사회장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한
허가 동물용의약품 또는 국내 신고·허가되지 않은
동물용의료기기로서 대한수의사회장이 동물병원 진료에
필요하다고 추천한 동물용의료기기



※ 관련 법령

「약사법」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의료기기법」 제46조
(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7조
(연구시험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



2. 신고방법

- 1 신고서(취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전자우편 포함) 또는 방문 신청
- 2 동물용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24.1.1일부터 운영)

구비서류

- ① 송장 또는 보류통지서 사본 1부
- 발송인(해의 판매업체)가 수하인(신고인)에게 보내는 거래명세서 등으로 신고서상의 제품 및 수량과 일치하여야 함
- ② 한글표시사항 1부
- 동물용의약품 제품명,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 제조원 및 제조국, 원료약품 및 분량, 용법·용량, 효능·효과,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 주의사항
- 동물용의료기기 제품명(품목명, 형명), 분류번호(등급), 형상·구조, 원자재 또는 성분·분량, 제조방법, 성능·사용목적, 조작방법 또는 사용방법, 포장단위, 저장방법·사용기한, 주의사항, 시험규격, 제조원 등
- ③ 사용계획서·시험계획서 또는 배부계획서 1부
- 사용목적, 수입수량 및 포장단위, 사용일정(시작연월일~종료연월일), 사용기관(동물병원 명칭), 적응증과 관련된 질병 소개, 관련 질병 최신 임상(연구)동향, 대상 수출국 허가 여부, 동물병원 진료용으로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량의 세부내역을 기재하고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에 대한 날인을 포함
- ④ 제품설명서 1부
- 수입 제품의 설명서(영문) 및 카탈로그 등
- ⑤ 대한수의사회의 추천서 1부



3. 처리절차



※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문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보완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음
※ 「가족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에 따른 가족전염병 또는 가족전염성 질병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대상이 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품목 또는 수량을 제한할 수 있음

4. 위반 시 처벌 규정

- ① 「약사법」 등에 따른 수입신고 없이 동물용의약품등을 수입한 경우
 - 「약사법」 제 61조(판매등의 금지), 제93조(벌칙)제1항제10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기기법」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제1항·제51조(벌칙),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7조(연구시험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 제52조(행정처분기준)제1항 [별표 3] II. 개별기준제2호에 따라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7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 ② 불법 동물용의약품을 판매·알선하거나 광고한 경우
 - 「약사법」 제 61조2(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 광고 금지 등), 제95조(벌칙)제1항제10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수입신고한 동물용의약품을 용도외에 사용한 경우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7조(연구시험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 제52조(행정처분기준)제1항 [별표 3] II. 개별기준제3호에 따라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농림축산검역본부